

2019년도 제57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 2019. 5. 7.(화요일), 16:00
- 장 소 :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 석 자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위원 3명 참석
 - 심의위원 : 강상욱, 백대용, 손승우(분과위원장)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19-51회)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1,000건(안건번호 제2019-30163호~30373호)
 - 회의결과: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 995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된 심의안건 게시물 5건은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기로 의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손승우 분과위원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 제57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19-51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손승우 분과위원장 : 전차 회의록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의견을 구함
- 성원영 전문위원 : 회의록 4쪽, 6쪽 온라인서비스명 공개 여부에 관하여 위원들에게 의견을 구함
- A 위원 : 해당 온라인서비스명은 비공개 처리하여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성원영 전문위원 : 회의록 6쪽, 10쪽, 11쪽 저작물명 공개 여부에 관하여 위원들에게 의견을 구함
- A 위원 : 저작물명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 B 위원 : 같은 생각임
- C 위원 : 같은 생각임

- B 위원 : 7쪽 ebay(미국의 오픈마켓)에서 해당 제품의 특정 판매 금액과 관련하여 '저렴한 가격으로'라고 변경할 것을 요청함
- A 위원 : 문구 수정에 찬성함
- C 위원 : 같은 생각임
- 성원영 전문위원 :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 회의록의 공개 여부에 관하여 위원들에게 의견을 구함
- C 위원 :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 회의록은 비공개로 처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됨
- B 위원 : 같은 생각임
- A 위원 : 같은 생각임
- 손승우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한 이상 없음을 확인하며, 특정 온라인서비스명은 비공개 하고 정보제공청구는 「저작권 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하며 나머지는 모두 공개하기로 결정함

3. 안전상정

- o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성원영 전문위원 : 금일 심의대상 안건은 안건번호 제2019-30136호~30373호로 심의대상 게시물은 모두 1,000건임
안건번호 제2019-30136호는 보호원이 조사하여 발견한 불법복제물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웹하드 사이트에서 현재 상영 중인 최신 영화인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불법복제물을 판매하고 있는 사안임
위 영화는 2019. 4. 24. 국내 개봉하였고 현재 예매율 1위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심의대상 게시물의 영상물은 영화상영관에서 무단 녹화한 것으로 이른바 ‘캠버전’에 해당함
위 영상물은 전체 3시간 1분 중 2시간 53분 21초를 중국어 자막과 함께 제공하는 것으로 보임
다만 현재 불법복제물을 제공하고 있지 아니함
- 손승우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건번호 제2019-30136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C 위원 : 현재 상영 중인 최신 영화의 불법복제물로 시정 조치를 권고하는 것이 타당함
- B 위원 : 같은 생각임
- 손승우 분과위원장 : 영화상영관에서 무단 촬영한 최신 영화를 제공하는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가결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함
다만 심의위원회의 심의 시점 현재 이미 삭제되어 있으므로 게시자에

게 저작권법 준수를 안내하기 위하여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보여주면서)안건번호 제2019-30164호~30373호는 영화, 음악 등 저작물의 불법복제물을 인터넷 사이트에서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특히 안건번호 제2019-30293호, 30294호는 저작물명 란에 'BTS'가 실연한 '소우주(Mikrokosmos)'로 기재되어 있는데, 심의대상 게시물은 '소우주' 외에도 여러 음원파일을 함께 제공하고 있음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보여주면서)게시물에서 압축파일을 다운로드하면 2019. 4. 12. 발매된 '방탄소년단'의 'MAP OF THE SOUL : PERSONA' 앨범에 수록된 총 7개의 음원파일을 이용할 수 있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19-30251호~30258호는 일본 Tokyo MX에서 2019. 1. 7. ~ 2019. 3. 25. 방영한 애니메이션으로 한국어 자막이 함께 제공되는 사안임

- A 위원 : 안건번호 제2019-30251호의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보면 모니터링 일시가 2019. 4. 19. 03:47로 되어 있는데 새벽 시간에 조사한 것이 맞는지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재택모니터링 근로자가 모니터링 한 것으로 새벽 시간이 맞다고 대답함

- A 위원 : 재택모니터링 근로자가 새벽 시간에도 모니터링을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재택모니터링 근로자는 주간, 야간, 심야 3개의 조로 근무하고 있는데, 본 건은 새벽 1시~4시 사이에 근무하는 심야근로자가 모니터링 한 것으로 보임
- A 위원 : 충분한 답변이 되었음
- C 위원 : 의견 없음
- B 위원 : 시정권고 하는 것이 타당함
- 손승우 분과위원장 : 안전번호 제2019-30164호~30373호 게시물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4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를,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조치 권고를 만장일치로 가결함

(경고, 삭제 및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30163호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안전번호 제2019-30164호~30373호 게시물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4건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고, 나머지 995건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는 것으로 의결함”

4. 폐회 선언

- 손승우 분과위원장이 제57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19년 제57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 5. 13.

분과위원장 손승우

위원 강상욱

위원 백대용